

■ 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 3의3] <신설 2021. 4. 1.>

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(제12조의2제4항 관련)

1. 수질측정 방법

가. 수질측정항목

- 1) 일반세균
- 2) 총 대장균군
- 3)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
- 4) 암모니아성 질소
- 5) 동
- 6) 아연
- 7) 철
- 8) 망간
- 9) 염소이온
- 10) 잔류염소
- 11) 탁도

나. 시료는 해당 관리지역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하되,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

다. 수질측정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를 것

2. 검사주기: 제1호에 따른 수질측정 방법으로 월 2회 이상 실시할 것